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047 제출연월일 : 2024. 6. 27.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지정 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전단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9조의6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자료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5제2항 전단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생 략)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②
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	
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	
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	
하고 시・도지사와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의 해제) ① (생 략)	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②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 해제	
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②
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공	
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u>보고</u> 하	<u>통보</u>
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세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③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	
에는 그 승인 취소 내용을 공보	
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u>통보</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에69조 <u>(보고 및 자료의 제출)</u> ①	제69조(자료의 제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 <u>제출</u>----.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 략)